

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 가입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3. 11. 27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295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1. 3. 강남구청장(주민자치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11. 27.)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행정국장 : 이호현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화 및 조문을 재정비하여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
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(주민등록법)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현행화
- 조문 재정비 및 별지서식 신설
 - 중복 문구 삭제 및 맞춤법 정비
 -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를 위한 보험관리대장(서식) 신설
- 보험의 직무포괄계약방식에 따른 피보험 대상 변경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주민등록법」 제36조 및 「인감증명법 시행령」 제20조
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-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기 타
 - 입법예고(2023. 9. 27. ~ 2023. 10. 1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 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성수)

- 본 일부개정 대상 조례인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 가입에 관한 조례」는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7개 조문 중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6조와 관련된 것으로 전 부개정에 해당할 수 있으나, 그 세부적 내용이 주요 사항의 개정이 아닌 조문 내 자 구 정비에 해당하고 있는 정도임.
 - 안 제2조(정의)는 제1호 중 “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”을 설명하는 것으로 “주민등록 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”를 “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 등 과”로 하고, 뒤이은 “주민등록 잔출입업무”는 삭제하는 것임.
 - 안 제3조는 현행 제3조(보험의 가입) 중 제1항의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”으로 하고, “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”을 “보험”으로 하는 것임.
 - 안 제6조는 현행 제6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 중 제1항 “피보험자”를 “보험 가입 대상 업무”로 하여 실제 보험계약 내용과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보이며, 제2 항 중 “보험관리대장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관리대장”으로 구체화하였음.
- 본 일부개정안은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보험가입 관련 본 조례 내용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한 자구정비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큰 쟁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,
 - 계약방식이나 실제 보험 가입운영 실태 등은 주민자치과의 보충설명이 필요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 가입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. 끝.